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61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문진석 · 박정현 · 손명수
이연희 · 이건태 · 민홍철
이주희 · 박상혁 · 김주영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계획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지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